

	<h2 style="margin: 0;">현장실습지원센터규정</h2>	규정번호	3-7-18
		제정일자	2014.03.01.
		개정일자	2019.03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대외협력처 (현장실습지원센터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업무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업무 및 기능) ① 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, 관련 규정 제·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·관리를 하며,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학과와 협력하여 운영·지원한다.

1.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
2.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및 참여 신청, 접수 관리
3. 학생 참여 신청, 접수 관리
4. 학생 선발 및 실습기관 배정
5.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
6.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
7.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
8.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

② 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,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.

③ 지원센터에서는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세부운영계획서에 따른 현장실습의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, 실습기관의 의견 및 조치 필요사항 등을 청취하고, 학생지도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습기관과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.

제3조(구성) 지원센터는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지원센터장 1명
2. 운영위원 5명 이상 15명 이내
3. 간사 1명
4. 사무직원 1명 이상

제4조(지원센터장) ① 지원센터장은 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한다.

③ 지원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임기 만료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는 총장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임명한다.

제5조(운영위원) ① 운영위원은 대학 전임교원과 외부인사 중 지원센터장의 위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운영위원은 지원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.

③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센터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지원센터장을 보좌하며,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.

제7조(사무직원) ① 지원센터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직원은 지원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지원센터에는 지원센터장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사항
2. 현장실습 운영,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원장은 지원센터장이 되며, 지원센터장의 부재시 위원 중 호선하여 호선된 자가 지원센터장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지원센터장과 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되, 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 한다.

제9조(재정) 지원센터의 재정 총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외 사업비
2. 교내 사업 지원비 및 운영 지원비
3.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

제10조(사업비 예치) 산학협력단의 예치된 사업비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예산 및 결산) ① 지원센터의 예산 편성은 대학의 회계 연도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지원센터의 예산 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장이 수행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현장실습지원센터 설립인가(2012.05.01.)이전의 센터 운영은 동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